

1. 개정이유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령안('21.5.18. 공포)이 '21.11.19. 시행 예정인바, 동 법률은 문학관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재산의 기부 또는 기증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기부 또는 기증의 절차, 관리·운영 방법 등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문학진흥법 시행규칙」의 내용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부의 절차 등(안 제5조의2)

법 제30조의3 제3항에 따라 기부를 위한 절차를 규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기증품 및 기증서약서의 제출, 수증여부 결정을 위한 수증심의 위원회의 설치 근거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나. 수증심의위원 등(안 제5조의3)

안 제5조의2 제2항에 따라 수증심의위원회에 관해 규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수증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의결 방식, 수증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른 문학관의 장의 수증여부 결정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기관 협의 예정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

3) 행정규제 : 없음

문학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학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기증의 절차 등) ① 법 제30조의3 제1항에 따른 문학관의 설립

·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금전, 부동산, 문학관 자료로서 가치가 있는 유물과 유품 등의 재산(이하 “기증품”이라 한다)을 기부 또는 기증(이하 “기부 등”이라 한다)하려는 자는 기증품과 별지 제2호의2 서식의 기증서약서를 문학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문학관의 장이 기증품을 기증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증심의위원회를 두어 수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5조의3(수증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제5조의2 제2항에 따른 수증심

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1명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② 수증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문학관의 자료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문학관의 장이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영 별 표에 따른 전문인력 1명으로 한다. 다만 전문인력이 2명 이상인 경우 전문인력 가운데 문학관의 장이 임명하며, 전문인력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문학관의 장이 당연직 위원이 된다.

- ③ 수증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가운데 호선한다.
 -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문학관의 장은 수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증품의 수증여부를 결정한 후 기증을 하려는 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증받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하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즉시 해당 기증품을 반환하여야 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증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학관의 장이 정한다.
- 별지 제2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증서약서

제 호

기 증 서 약 서

명 칭 / 종 류	수 량 / 금 액	비 고
합계 : 건 점 / 원		

「문학진흥법」 제30조의3에 따라 위의 기증품을 [] ○○ 문학관 에
기부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날인 또는 서명)

법인·단체명 : (대표자의 날인 또는 서명)

주 소 :

전 화 번 호 :

[] ○○문학관 귀하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5조의2(기증의 절차 등) ① 법 제30조의3 제1항에 따른 문학관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금전, 부동산, 문학관 자료로서 가치가 있는 유물과 유품 등의 재산(이하 “기증품”이라 한다)을 기부 또는 기증(이하 “기부 등”이라 한다)하려는 자는 기증품과 별지 제2호의2 서식의 기증서약서를 문학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 <u>② 문학관의 장이 기증품을 기증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증심의위원회를 두어 수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u>
<u><신 설></u>	<u>제5조의3(수증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제5조의2 제2항에 따른 수증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1명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u> <u>② 수증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문학관의 자료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u>

문학관의 장이 위촉하며, 당연
직 위원은 영 별표에 따른 전문
인력 1명으로 한다. 다만 전문
인력이 2명 이상인 경우 전문인
력 가운데 문학관의 장이 임명
하며, 전문인력이 존재하지 아
니하는 경우 문학관의 장이 당
연직 위원이 된다.

③ 수증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가운데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문학관의 장은 수증심의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기증품의 수
증여부를 결정한 후 기증을 하
려는 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과
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
증받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하
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즉시 해
당 기증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
정한 사항 외에 수증심의위원회
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
학관의 장이 정한다.